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만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8270 발의연월일: 2025. 2. 19.

발 의 자:이만희·서천호·김소희

정희용 • 김기웅 • 권영진

김선교 • 김대식 • 조은희

이달희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이나 사업장 신설 및 이전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음.

한편 대다수의 농촌지역은 인구감소 및 고령화로 인하여 소멸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으로, 이만희의원이 대표발의한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」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을 지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촌인구유입 등에 관한 시책을 세우는 등 농촌에 대한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.

이러한 농촌 소멸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양질의 일자리 공급이 필 요하므로 농촌구조전환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및 이전하 는 기업에게도 세제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창업이나 사업장 신설 및 이전을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

경우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는 대상지역에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을 추가하려는 것임(안 제75조의5제1항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이만희의원이 대표발의한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3431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5조의5의 제목 중 "인구감소지역"을 "인구감소지역 등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인구감소지역"을 "인구감소지역 및 「농업・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에 따라 지정된 농촌구조전환 우선지역"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인구감소지역 등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) 제75조의5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75조의5(인구감소지역에 대한	제75조의5(인구감소지역 등에 대		
감면) ① 「인구감소지역 지원	한 감면) ①		
특별법」에 따라 지정된 <u>인구</u>	<u>인구</u>		
<u>감소지역</u>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	<u>감소지역 및 「농업·농촌 및</u>		
하는 업종을 창업하기 위하여	<u>식품산업 기본법」에 따라 지</u>		
취득하는 부동산이나 대통령령	정된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		
으로 정하는 사업장을 신설(기			
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를			
포함한다)하기 위하여 취득하			
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			
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			
세를 감면한다.			
1.・2. (생 략)	1.・2. (현행과 같음)		
② ~ ④ (생 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		